

# 18. '96 稅法改正案 主要內容

資料提供：財政經濟院

##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▲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인하(조감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인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면전 과세표준의 12%</li> </ul> </li> <li>※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96년까지 최저한세 적용배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저한 세율을 10%로 인하</li> <li>- 97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적용</li> </ul>
▲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 도입(소득세법·법인세법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</li> <li>〈대상〉중소기업</li> <li>〈소급공제기간〉1년</li> <li>〈환급세액〉: 전기납부세액 - (전기과표 - 당기결손금) × 전기세율</li> <li>※ 환급세액은 전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함</li> <li>〈환급절차〉과세표준신고시 소급공제신청(신청공제)</li> <li>〈기타〉소급공제를 신청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 감면 제도 보완 (조감법)</p>	<p>○중소제조업등 특별세액감면                      -대상 : 제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물류산업                      -감면 : 매년 소득세·법인세의 20%                      -중복지원 배제 :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</p>	<p>-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.                      ※창업중소기업감면(5년간 50% 감면) 등 기간감면은 제외</p>
<p>▲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(조감법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○제조·광업·도매·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                     -다음 ①, ②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함                      ①현행방식(매출세액-매입세액)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                     ②[매출액×업종별 부가가치율]×10%                      ○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에 위임</p>
<p>▲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(조감법)</p>	<p>○창업중소기업 감면                      -대상 :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</p>	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	<p>-감면 :</p> <p>①소득세·법인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년간 50%</li> <li>· 다만, 수도권(서울, 인천 등 제외)내 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: 3년간 50%, 그후 2년간 30%</li> </ul> <p>②지방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득세 : 2년간 50% 감면</li> <li>· 등록세 : 2년간 50% 감면</li> </ul> <p>○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특별 부가세 감면</p> <p>-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입주실 수요자에게 분양시 특별부가세 50% 감면</p> <p>○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</p> <p>-창업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처분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년간 50% 감면으로 통일</li> <li>○ 감면율을 75%로 상향조정 (내무부와 협의)</li> <li>○ 민간건설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양시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와 같이 특별부가세 감면</li> <li>※아파트형 공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</li> <li>○ 증권거래세비과세</li> <li>-창업투자회사(투자조합 포함)가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처분시 증권거래세(0.5%) 비과세</li> <li>○ 민간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감면</li> <li>-5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감면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중소기업자가 제조업, 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세액감면허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종전환 :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50% 감면</li> <li>- 업종추가 : 3년간 50%, 그후 2년간 30%</li> </ul> </li> <li>※ 추가업종 매출액이 3년내 70% 초과시 적용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5년간 50% 감면으로 통일</p>
<p>▲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지원 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(공제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 대기업이 제조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지도비에 대해서만 지출액의 10%를 기술인력 개발비로 세액공제</li> <li>-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li>(공제대상비목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도요원 인건비등 지도관련경비, 직업훈련관련비용, 국내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비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대기업이 제조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해서만 10%의 투자세액공제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종제한을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업외에 건설업, 광업, 물류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○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 허용</li> <li>○ 세액공제대상 비목의 범위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외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비 및</li> <li>- 국내의 대학(이공계)·기업체에의 위탁훈련비를 추가</li> </ul> </li> <li>○ 업종제한을 완화하고,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적용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개발준비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정한도 : 매출액의 3~5%</li> <li>- 사용기준(3년내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술개발비, 기술훈련비 등</li> <li>· 중소기업 기술저도비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대 기업 또는 중소기업인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추가</li> <li>○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무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기업 : 손금산입특례를 허용하여 전액 손비인정</li> <li>· 중소기업 : 익금 불산입하여 소득세·법인세 비과세</li> </ul> </li> <li>-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무산지원하는 경우에도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
<p>▲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(조감령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 판정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업원수 기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업종별 20~1000인 이하</li> <li>· 한달이라도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li>- 업종기준, 자산총액기준, 소유 경영독립요건(30대 계열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○ 유예기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을 초과하거나,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</li> <li>-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(2년간 유예)는 중소기업으로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간 월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평균인원이 기준이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유예기간연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2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 (3년간 유예)</li> </ul> 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기업이 기술개발비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</li> <li>-적립한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산업 : 매출액의 3%</li> <li>• 기술집약산업:매출액의 4%</li> </ul> </li> <li>※정밀기계·전자·화학·신소재등·자본재산업 : 매출액의 5%</li> <li>-익금환입 : 3년거치 3년분할 환입</li> <li>○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은 일정기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</li> <li>-설비투자세액공제(투자금액의 3~10%) : 4년</li> <li>-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지출액의 5~15% 또는 증가지출분의 50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산업 : 5년</li> <li>• 자본재산업 : 7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술집약산업의 경우도 자본재산업과 같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한도를 매출액의 5%로 상향조정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월공제기간을 7년으로 통일</li> </ul>
<p>▲SOC투자준비금등의 적용시한 연장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96. 12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제도</li> <li>1. SOC투자 준비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상법인 : 도로공사, 한전, 한국통신, 수자원공사 등</li> <li>-손금산업한도 : SOC투자금액의 15%</li> </ul> </li> <li>2.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준비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손금산입 :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15%</li> </ul> </li> <li>3. 전액손금산입기부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KAIST등 과학기술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</li> <li>- 96. 12 → 98. 12</li> </ul>

### 근로소득세 경감 및 과표양성화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 근로소득세 경감(소득세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로소득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00만원 이하분 : 전액</li> <li>- 400만원 초과분 : 30%</li> <li>- 공제한도 : 연 8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○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 : 45%</li> <li>- 산출세액 50만원초과분 : 20%</li> <li>- 공제한도 : 연 5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제한도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0만원 이하분 : 전액</li> <li>- 500만원 초과분 : 30%</li> <li>- 공제한도 : 연 9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과 같음)</li> <li>- 산출세액 50만원초과분 : 30%</li> <li>- 공제한도 : 연 6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
<p>▲ 배우자의 대학교육비 공제(소득세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인 : 대학교육비까지 공제</li> <li>- 직계비속·동거입양자·2인 이내의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95년까지 : 초·중·고교의 교육비공제</li> <li>• 96년부터 : 대학의 교육비공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배우자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인정</li> <li>○ 형제자매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하되, 공제인원 제한은 폐지</li> </ul> </li> </ul>
<p>▲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 (조감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[직전 또는 2년전의 수입금액 중 큰 금액] 보다 20%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% 초과 증가분의 30%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 경감</li> </ul> </li> <li>〈적용대상사업자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전과세기간 말까지 1년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 (기장신고자)</li> </ul> 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신용카드 및 POS거래 세액공제제도 (조감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(수입금액증가분을 한도로 함)의 50%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 경감</li> <li>○ POS매출 증가분초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입증가 세액공제액 계산시 신용카드거래증가분은 차감하여 2중 세액공제 배제</li> </ul> </li> </ul>
<p>▲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(소득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음의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시에는 지급금액의 1%를 원천징수(열거주의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동산업·임대업, 변호사업·공인회계사 등 일부의 사업서비스업</li> <li>- 배우·직업선수 등 일부의 인적용역 제공자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천징수 대상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·보건용역의 대가지급시 지급금액의 1%를 소득세로 원천징수(포괄주의)</li> </ul> </li> <li>※추가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적용역 : 음악·무용·바둑교사용역 등</li> <li>- 의료용역 : 수의사용역·의약품 조제용역 등</li> <li>- 보건용역 : 소득업자의 청소용역 등</li> </ul> </li> </ul>
<p>▲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범위 확대(소득령·법인세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(1%)적용(Positive system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주택신축판매업</li> <li>- 변호사·부동산감정업</li> <li>- 소프트웨어개발·컴퓨터프로그램개발</li> <li>- 신용조사</li> <li>- 건축관련기술서비스업</li> <li>-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(법인도 적용)</li> <li>○ 다만, 다음의 사업자는 제외(Negative system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</li> <li>-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자</li> </ul> </li> </ul>

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가계장기저축 (조감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p>○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·배당소득은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세대 1통장</li> <li>- 월불입액 100만원(분기당 300만원) 한도</li> <li>- 적립식 저축</li> <li>- 저축기간 3년 이상</li> <li>- 취급기관: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</li> </ul> <p>※98년 12월말 이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</p> <p>※농어촌특별제도 비과세</p>
<p>▲근로자 주식저축(조감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p>○ 다음의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5%를 세액공제하고, 이자·배당소득을 비과세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입대상: 모든 근로자</li> <li>- 투자대상: 주식</li> <li>- 저축한도: 월급여의 30%(총 납입액 1천만원 한도)</li> <li>- 저축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시납의 경우: 납입일부터 1년이상</li> <li>• 분할납의 경우: 최종불입일부터 1년이상 거치</li> </ul> </li> <li>- 취급기관: 증권회사</li> </ul> <p>※97년 12월말이전 불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</p> <p>※농어촌특별제도 비과세</p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▲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축 소(소득세법 ·법인세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접대비손금산입한도(①+②+③)</li> <li>①기초금액 : 2,400만원</li> <li>②자기자본(50억 한도) : 2%</li> <li>③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0억이하까지 : 0.3%</li> <li>100억~1,000억 : 0.2%</li> <li>1,000억초과 : 0.1%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(현행유지)</li> <li>②자기지본(50억 한도)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%(중소기업)</li> <li>1%(대기업)</li> </ul> </li> <li>③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00억이하까지 : 0.3%</li> <li>100~500억 : 0.2%</li> <li>500억초과 : 0.1%</li> </ul> </li> </ul>

**납세절차 및 세제 간소화**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▲연말정산시기 조정(소득세 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칙적으로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</li> <li>○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월분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</li> </ul>
▲보험모집인에 대한 과세방 법 개선(소득 세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행위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</li> <li>-원천징수 : 수입금액 지급시 지급자가 1% 세율로 원천징수</li> <li>-확정신고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</li> <li>• 확정신고시 기원천징수세액은 공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도입</li> <li>-원천징수 : 현행과 동일</li> <li>-연말정산 :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가 연말정산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▲세무관서 서류제출에 대한 접수증교부제도(국세기본법)	〈신 설〉	○ 세무관서가 납세자로부터 각종 세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의무화
▲심판청구인 자격범위 확대(국세기본법)	○ 현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 제한	○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처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때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
▲심사청구서의 보정기간 연장(국세기본법)	○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 나 절차가 세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-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	○ 보정요구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
▲공매대금의 납부기한 연장(국세징수법)	○ 공매대금의 납부기한 - 원칙 :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내 - 예외 :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일까지 연장가능	○ 추가 연장기일을 30일에서 최장 60일 이내로 연장함
▲납부기한의 지정기한 연장(국세징수법)	○ 원칙 : 고지일부터 15일내에서 지정 ○ 예외 : 상속세의 경우는 30일내에서 지정	○ 납기지정기한을 연장하여 30일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▲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 확대(국세징수법)	○ 급여, 임금, 봉급, 세비,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1/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	○ 압류제한 급여의 범위에 퇴직금도 포함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양도세 감면 신청제도 개선(조감법)</p>	<p>○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, 10년 이상 경영목장 이전시 등에 있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- 양도자가 감면신청기한 내에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 인정(신청감면)</p>	<p>○ 신청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 인정(당연감면)</p>
<p>▲양도세 물납 제도 개선(소득세법·법인세법)</p>	<p>○ 양도세 물납                      - 양도세액이 1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「토지개발채권」으로 물납가능</p>	<p>○ 세무서장의 승인제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○ 물납대상 채권범위 확대                      - 토지개발채권 외에 토지수용법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함</p>
<p>▲유치송달제도 도입(국세기본법)</p>	<p>○ 고지서 등을 교부송달시 송달을 받을 자가                      -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: 공시송달                      - 부재중인 경우 : 재송달</p>	<p>○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서류를 유치(그 건물의 현관내, 우편물 수령함 등)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</p>
<p>▲채납정보공개 의 근거(국세징수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p>○ 고액·상습에 해당하는 체납자와 결손처분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(결손액)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</p>
<p>▲환급금액의 최저한 규정 (국세기본법)</p>	<p>〈신 설〉</p>	<p>○ 국세환급금이 1,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</p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세액공제제도 단순화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공정개선·자동화설비등</li> <li>- 세액공제: 투자금액의 10% (외산 3%), 다만 중소기업의 공정개선·자동화설비는 15%(외산 5%)</li> </ul> </li> <li>○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에너지절약시설, 공해방지시설, 재해예방시설, 유통근대화시설 등</li> <li>- 세액공제: 투자금액의 10% (외산 3%)</li> </ul> </li> <li>○ 임시투자세액공제: 10%(외산 3%)</li> </ul> <p>※법상 최대공제한도로 구체적인 공제율 및 적용시기는 시행령에 위임→95. 1. 1 이후 중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(96→98)하고, 투자세액공제율을 내·외산구분 없이 5%로 통일</li> <li>○ 내·외산 구분 없이 최대공제 한도를 10%로 단일화</li> </ul> <p>※향후 재시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</p>
<p>▲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상각제도 폐지(조감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연도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방법중 선택적용 허용</li> <li>- 대상설비투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생산성향상시설 투자</li> <li>• 에너지절약향상시설등 투자</li> <li>•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</li> <li>• 의료법인 의료기기 투자</li> <li>• 연구시험용설비 등 투자</li> </ul> </li> <li>- 세계지원방법: 다음중 선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액공제(10%, 외산 3%)</li> <li>• 일시상각(50%, 외산 30%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시상각제도 폐지</li> </ul>

분 야	현 행	개 정 안
<p>▲지급조서 미 제출가산세율 단일화(법인 세법)</p>	<p>○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지급자가 개인 : 2% 지급자가 법인 : 3%</p>	<p>○ 법인에 대한 가산세율을 2% 로 인하조정</p>
<p>▲납세완납증명 서 등의 단일 화(국세징수 법)</p>	<p>○ 납세완납증명서 ○ 징수유예증명서 ○ 체납처분유예증명서 ○ 미과세증명서</p>	<p>○ 「납세증명서」로 단일화</p>